

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80일(연장시 110일)
피해자	성명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보호자(필요시 기재)	보호자와의 관계(필요시 기재)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시설명	시설의 종류 인신매매[],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아동복지[], 청소년[], 기타[]	
	소재지	전화번호	
피해유형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그 밖의 착취[]		
피해상황 주요내용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신매매등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한 경위와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진단서(인신매매등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근로계약서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그 밖에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뒤쪽)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 확인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요청인 설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